

10.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

대통령령 제15,559호 1997. 12. 31

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토지초과이득세는 3년을 단위로 하여 부과하도록 되어,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휴토지로서 토지가격이 정상지가상승율이상으로 상승한 토지에 대하여는 1년을 단위로 상정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

최근 토지가격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1997년도분 상정과정에 있어서도 1996년도의 경우와 같이 가장 높은 정상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상정과정 대상토지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.

주 요 내 용

제49조제1항중 “서울특별시장·직할시장”
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

정한다.

- 부 칙 -

제15조제1항제1호의2나목 본문중 “직할시”
를 “광역시”로 한다.

①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
한다.

제16조제5항 후단중 “직할시”를 “광역시
(군지역을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② (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
는 예정결정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
분부터 적용한다.

제36조제3항중 “1996년”을 “1997년”으로
한다

주택회보